

2021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7.

해 남 군 수

1. 사업목적: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2. 신청기간: 2021. 3. 18.(목) ~ 4. 30.(금)
3. 신청장소: 선적항 기준 읍면사무소 산업팀
4. 신청자격
 - 가.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 상 회사
 - 나.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지급요건(이행점검일까지 의무 필수요건)

가.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직불금 신청년도에 아래의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기준 및 준수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

구분		근거법령	기준
기본 의무	총허용어획량 할당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가. 근해어업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 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나. 연안어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하거나(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할 것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	업종(근해어업), 지역의 업종(연안어업) 등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위(연안어업의 경우 최소 20척 이상)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자율 휴어기에 어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경우 선정시 가점 부여 가능 * 자율 휴어기는 기간을 연속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선택 의무	어선 감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생분해성 어구 사용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해양포유류 흔획저감장치 부착	「수산업법」 제64조의2	해양포유류 흔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최소 조업 일수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	

6. 지원단가

가.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나.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어선 1척당 아래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앞 구간의 기적용 합산 톤수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7.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가.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소규모어선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어선은 ‘톤수비례직불금’을 지급

나. 지급시기

- 지급시기는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임

8. 지급제한,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급제한

-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 (12월 이후)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 (12월 이후)까지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6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7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6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7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환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즉시 환수

※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다. 단체에 대한 제재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가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라. 제재부가금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 단,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가능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8. 기타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 준수 의무 이행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 및 예산의 총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수부에서 대상자 및 대상어선을 선정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061-530-5420)으로 문의바람